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4-1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72880 공개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변 론 종 결 2010. 12. 9.

판 결 선 고 2011. 1. 13.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가입한 회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3. 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내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자료는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3.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에 따라 위 2. 관련법령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다)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내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에 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



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피고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또는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열람이나 제출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로서 적어도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는 적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이메일은 적어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이나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또는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 여부

가) 피고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므로(제13조의 5, 제11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인정보제공현황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자료 확인자료제공과는 달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처분 종료시 수사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제공현황이 통지되지 아니하는 점,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 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현황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과 마찬가지로 수사 진행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3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피고가 그 집행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여부

가)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 단계에서 피고가 통신자료제공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통



신자료제공현황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점(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 6항) 등에 비추어 수사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서류라고 할 것 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사실무 내지 피고 업무의 현실상 필요에 따른 제한 여부

가) 피고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록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제공현황을 피고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의 형평과 체계상 맞지 아니하고, 피고가 임의로 통신자료제공현황 등을 알린 경우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상 본인인지 여부와 공개청구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가 그 요청에 따라 그 현황을 공개하면 정작 이용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피고와 같은 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자료제공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책임 추궁의 문제, 업무 과중 등으로 수사에 선의로 협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수사기관 등이 수사대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수사기록과 같이 볼 수는 없고, 통신자료의 제공을 통한 수사개시 여부는 수사의 밀행성이 크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는 어느 경우에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통신자료제공현황의 공



개를 금지할 사유는 될 수 없는 점, 인터넷의 특성상 본인인지 여부와 공개청구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은 공개청구시 확인절차 및 보안을 강화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는 달리 관할법원의 협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오히려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한 열람·제공 거부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현황에 관하여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피고가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



하여 제공을 거절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상 비밀유지의무와 통신사실자료제공은 일응 모순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구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하여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 제5조,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른 정보제공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공개요청을 거절한 점,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 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 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공개요청 거절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4-17

재판장 판사 최종한 _____

판사 조정래 _____

판사 남해인 _____